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6. 9.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우수중소기업 지정 기간 연장 시 시장의 임의적인 선정 기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6조 ③항에서 우수중소기업 지정 기간 연장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참고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 ③항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을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6조(우수중소기업 지정·육성)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u>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u>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중소기업 지정·육성) ①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u>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u>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 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우·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안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우수중소기업”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첨단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4호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지원)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기업인 등이 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 창업보육센터,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인 단체 육성 등의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2장 기업사랑운동 지원

제5조(기업사랑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미시 기업사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 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기업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심의가 필요한 사항
- 6. 예우대상 기업인의 선정 및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 7.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8. 우수 중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9.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 산업평화상 수상대상자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구미시기업사랑실무위원회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협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미시기업사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업의 날 지정·운영) ①시장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업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첨단 및 우수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지역에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홍보가 필요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최고기업인상 등 시상) ①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하여 구미시최고기업인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근로자에 대하여 구미시최고근로자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고기업인상은 올해의 최고기업인상과 매월 이달의 최고기업인상 각 1명으로 하며, 최고근로자상은 올해의 최고근로자상과 매월 이달의 최고근로자상 각 1명으로 한다.

제11조(산업평화상 등 시상) ①시장은 노사화합 등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의 근로자 및 기업인에 대하여 구미시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산업평화상은 근로자 및 기업인 각 1명으로 한다.

제3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대상) ①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2.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세계일류 중소기업, 이달의 우수기업 시상을 받은 기업
 3.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 받은 기업
 4. 경제관련 단체에서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장 장관 및 중소기업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기업
 5.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3조(지원 및 예우종류)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 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단 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다)
 2.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3.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적용은 중소기업에 한 한다.

제14조(홍보 및 관리) ①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대상기업에 대하여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담당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애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적용배제) ①시장은 예우대상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중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장 중소기업 고도화 촉진 등

- 제16조(우수중소기업 지정·육성)** ①시장은 중소기업중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하거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의 인정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 운영 등)**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 무역정보, 기업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제19조(첨단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지식기반산업 육성)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21조(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들의 향학기회 제공을 위한 산·학·연·관간의 공동협약으로 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내 대학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창업지원 등) ①시장은 중소기업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벤처기업 육성) ①시장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벤처집적시설(벤처타운)을 운영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원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벤처기업간의 협력체 구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구매·판로 지원) ①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읍면동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산학연협력사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투자유치) 시장은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제7장 기업애로 해소 추진

제28조(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①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미시기업애로지원센터』(이하“기업애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애로지원센터에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기업애로상담관제 운영) ①시장은 기업애로지원센터에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상담관은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등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상담관은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 및 중재가 필요한 경우 『기업사랑위원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상담관은 기업애로중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수 있다.

제8장 중소기업협의회 운영 지원

제30조(중소기업단체 육성)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중소기업인 상호부조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단체 육성·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1조(중소기업협의회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인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중소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3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